

사법감시

Justice Watch

격월간 「사법감시」 / 제7호 / 1996년 12월 / 등록일: 1996년 2월 23일 / 등록번호마-2428 / 발행인:김중배

목 차

초점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2

특집 · 대법관 인준청문회

미국의 대법관인준 청문회 3

대법관 임명시 인준청문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 6

사법통계청

미납추징금 3천억원, 권을 방법 없나 8

참여연대 대안

권력은 법률과 시민에 의해 견제되어야 9

부패방지법, 거둬드는 부패행렬 매듭지어야

공정거래법, 경제력 집중약화 ·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상속세법, 고액재산가들 과세 강화해야

노인복지법,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시급

생활보호법, 사회보장법으로 거듭나야

모니터리포트

리포트 쓸만한 재판들 13

판결읽기

전화교환원 차등정년 인정판결에 대하여 15

동향

「한견주의」 수사, 춤추는 언론 17

점검 · 경찰교육

시급한 경찰인권교육 18

경찰 총기사격, 문제없나 19

이것만은 고치자

사법통계의 허와 실 21

공익소송

공익소송의 새 장을 열자 22

cyber-law

Legal Justice Reform Network 24

설문조사

「사법감시」, 이렇게 본다 25

나의 사법피해사례

사람들은 나를 강간범으로 만들었다 28

사법감시 통신문

수사편의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 30

반론

「사법감시」 제6호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관행에
잇단 제동” 기사에 대한 반론 31

특집 · 대법관 인준청문회



대법관의 추가인선이 97년 2월로 다가왔다. 대법관 인준청문회의 필요성을 확인해 본다. 아울러 87년 Bork판사의 인준

거부사태 당시 미국시민권연맹이 작성한 자료를 소개하고 미국의 인준청문회제도와 후보의 평가기준 등을 살펴본다.

참여연대 대안

제181회 정기국회에 참여연대가 개정청원한 법안을 소개한다. 시민과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을 비롯하여 상속세법, 공정거래법,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등 시민입법운동의 형태로 제안된 개정법률안의 골자를 실는다.

설문조사

「사법감시」 창간 1년을 맞아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실는다. 통계결과와 더불어 「사법감시」에 보내준 의견을 모두 게재했다. 애독자들은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점검·경찰교육



경찰의 인권교육과 총기사용교육에 대한 제언이다. 유엔에서 발간한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 중 「경찰을 위한 인권포켓북」을 소개한다. 또한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총기사용 기술 교육실태를 점검한다.

이것만은 고치자

「사법연감」, 사법에 관한 순위를 통계자료획득이 가능한 유일한 자료이다. 「사법연감」의 통계구성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한 한상희 교수의 제언이다.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 본지 발행인)

법은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가. 그 새삼스럽고도 어리석은 물음이 전혀 새삼스럽거나 어리석지 않게 우리의 일상을 짓누른다. 떠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못박은 이 땅의 헌법이, 남루의 '헌 법'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반증일 터이다.

때문에 나는 엉뚱하다면 엉뚱하게도, 이 땅의 헌법을 명색 '엘리트의 성소'에 모셔두기보다는, 대중의 장바닥에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만화라도 좋다. 아니, 어쩌면 만화라야 할 지도 모른다. 아이들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헌법을 저절로 알아 익힐 수 있게 하는 대중의 헌법책을 만들어 보자는 소망이다.

법률가는 끝내 법의 '마술사'이며, 저주받아야 할 이웃이어야 하는가. 역시 그 새삼스럽고도 어리석은 물음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여전히 법은 멀고 권력의 주먹은 가깝다는 반증일 터이다.

때문에 나는 또 다시 어처구니없다면 어처구니없는 상상력에 사로잡히곤 한다. 아이들의 장난감에서부터, 어른들의 '고스톱'에까지 법률가의 법률가다운 구실을 놀이의 틀 속에 끼워 넣을 수 없을까 하는 꿈이다. 그야말로 꿈같은 소망이다.

필경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펼쳐 온 사법감시도, 나의 엉뚱하면서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보다 진지하게 가꾸어 가고자 하는 운동의 하나임을 믿는다. 아전인수라고 나무라지만은 말아 주기 바란다. 국민이 주인되는 사법의 바탕은 무엇인가. 법의 무지를 넘어서는 법의 앎이다. 주인이 스스로 주인임을 깨닫고 행동케하는 앎의 무장이다.

물론 사법감시운동은 그쯤의 계몽적 수준에서 지족할 수는 없다. 사법의 탈선과 회청거름을, 부릅뜬 눈으로 드러내고 바로잡아 가는 길이다. 그렇다. 그 길이야말로 가장 실천적인 계몽의 방법이기도 하며, 가장 실질적인 구원의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자부에 이르는 멀지만, 이제 창간 한 돌을 맞은 우리의 『사법감시』는 그 부단한 노력의 '성적표'이다. 우리의 맘을 뿌린 대로 거둔 결과이다. 우리는 그 이상의 과장된 평가를 바라지 않는다. 애당초 우리의 운동은, 숨가쁜 단거리 경주일수 없다는 확신으로 출발점에 나서지 않았던가.

초입의 초입에 불과한 그 길목에서, 더러는 사법감시를 '감독'으로 오인하거나, 실명의 비판을 비판하는 반응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던 적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찍이 다짐했던 그대로, 오해와 편견으로 빚어지는 비판과 반론까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

우리의 운동이 어떤 행정의 틀을 연상케 하는 '감독'일 수 없으며, 주인의 주인다운 구실을 다하는 감시임을 우리의 운동으로 다져 나아가고자 한다. 실명의 비판이 실명의 당사자를 음해하고자 함이 아니며,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의의 추구임을 스스로 입증해 가고자 한다.

국민이 주인되는 사법정의의 길이 아무리 멀다고 할지라도, 가다가 말아야 할 길일 수는 없다. 끝내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위해서는 구체적 정의를 위한 구체적 사안의 감시와, 대안의 제시는 더욱 무게를 더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더러는 산만해 보이기도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감시와 대안의 '집중'과 '밀도'에도 뜨거운 맘을 뿌려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근대사법 1백년을 넘긴 사법의 새 세기를, 민주사법의 새 세기로 가꾸어 나아가는데 있음을 거듭 다짐해 두고자 한다. 

미국의 대법관 인준청문회

Robert H. Bork 판사 인준거부를 중심으로

다음 소개의 글은 1987.9.9 미국시민권연맹이 작성한
〈Report on the Civil Liberties Record of Judge Robert H. Bork〉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 자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미국시민권연맹의 협조로 단독 입수한 것이다.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는 첨부자료를 제외한 본문에 한해 복사비와 송료 부담하에 제공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미국에서의 대법원판사 인준청문회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준문제는 미국의 헌법 제2장 제2조의 규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advice)과 동의(consent)에 의해 ... 대법관 등을 임명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온전한 삼권분립정신이 낳은 하나의 타협물이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면서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상원이 동의라는 조건을 달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대법원으로 기능하게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흔히 대법관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불리워진다. 대법관이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한 사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모든 사회적 분쟁과 갈등이 결국 대

법관들의 손에 의해 어느 한쪽을 손들어주게 마련이다. 실제로 미국 대법원의 역사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서 서로 엇갈려 왔고 이럴 때 한 대법관의 의견은 결정적으로 한 시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사회세력간의 쟁투를 하나의 전투라고 표현하곤 한다.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동성연애자의 권리를 위한 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기업과 노동조합등 모든 계급과 계층, 이해집단, 공익단체들이 나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한다. 전국이 대법관 임명 때마다 흥역을 앓게 되는 것이다.

Robert H. Bork 판사와 인준 거부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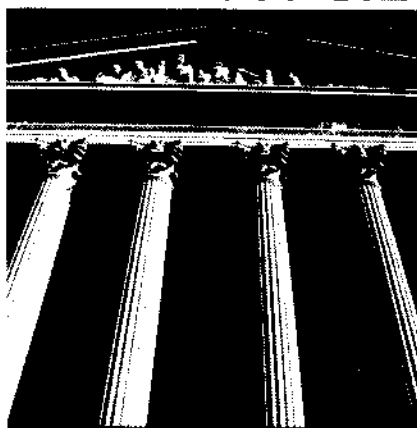
1987년 7월 1일 레이건 대통령은 Powell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Robert Bork 판사를 지명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Robert H. Bork 판사의 임명에 관한 인준과정은 하나의 드라마였다. 예일대학교수와 미국연방항소심판사 등을 지낸 Bork 판사는 자유주의 지성인들과의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온 '전



1987년 7월 1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Robert Bork 판사의 지명을 발표하고 있다.

HOW THE BORK NOMINATION SHOOK AMERICA

BATTLE OF JUSTICE



ETHAN BRONNER

"Extremely dramatic history." — New York Times

1989년 ETHAN BRONNER이 쓴 책의 표지. 미국국민들이 대법관 인사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보여주고 있다.

투적' 판사이기도 하였다. 레이건대통령에 의해 Bork 판사가 후보자로 지명되자 전국에 걸쳐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이미 레이건대통령에 의해 수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상태에서 미국의 대법원이 보수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하버드 법대 헌법학 교수였던 Tribe는 그 반대운동의 선두에서 있었다. 그는 미국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법관이 쉽게 인준되는 과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열렬히 이 운동에 뛰어들었다. 1985년에 이미 그는 행정권과 사법권의 균형, 대법원의 위기에 관하여 "신이여, 대법원을 구하소서" (God Save This Honorable Court)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다.

전국의 수많은 인권.시민.여성.노동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들은 Bork판사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 꼬치꼬치 물고 늘어졌다. Bork판사의 그동안의 모든 행적과 사상이 이 과정에서 제시되고 지적되고 논란되었다. 이 문제는 거의 매일 텔레비전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고 곳곳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상원에서 의 인준청문회는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방송을 하였고 때로는 재방, 삼방되기도 하였다. 국민들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상원의원에게 전화로 자신의 견해를 말하여 압력을 가하기가 일쑤였다. 결국 미국의 평

범한 시민들도 대법관의 임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었다. 마침내 1987년 6월 상원 사법위원회는 9:5로 Bork판사의 대법관인준을 거부함으로써 이 긴 논쟁은 끝맺었다.

미국시민권연맹(ACLU)의 보고서

미국시민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이하 연맹이라고 함)은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답게 대법관인준과정에서 과장 활발하게 대응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인준대상이 된 대법관 후보의 인권기록(civil liberties record)에 대한 소상한 항목을 두어 거기마다 나름대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후보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 수집대상에는 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 그 후보가 쓴 논문과 기고문,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자료들이 WESTLAW, LEXIS 등의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수집이 손쉽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ACLU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법률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 작업에 자원 봉사(pro bono)활동으로 참여한다. 참고로 Bork판사 보고서에 수록된 평가목록을 살펴본다.

- A. 평등보호(여기서는 주로 인종간의 평등을 말한다) 및 투표권(voting rights)
- B. 남녀 차별
- C. 교회. 국가
- D. 언론자유
- E. 프라이버시
- F. 형사법
- G. 법원에 대한 접근
 - a. 연방법원에 제소할 권한의 제한
 - b. 정부의 면책의 확대
 - c. 관할조항의 협소화
- H. 행정부의 권한

REPORT ON THE
CIVIL LIBERTIES RECORD
OF JUDGE ROBERT H. BORK

PREPARED BY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132 West 43rd Street
New York, New York 10036

Revised 9/9/87

REPORT ON THE CIVIL LIBERTIES OF JUDGE ROBERT H. BORK

CONTENTS	PAGE
I. Introduction	1
II. Judicial Appointments	5
A. History of the Appointments Clause	6
B. How the Senate has Exercised its Role	8
C. The Senate's Appropriate Role	9
III. Civil Liberties Record	10
A. Equal Protection and Voting Rights	10
B. Sex Discrimination	16
C. Church/State	18
D. Freedom of Speech	22
E. Privacy	28
F. Criminal Law	31
G. Access to the Courts	33
1. Restrictions on Standing to Sue in Federal Court	35
2. Expansion of Sovereign Immunity Protection for the Government	38
3. Narrow Construction of Jurisdictional Statutes	38
H. Executive Power	39
IV. Conclusion	46

미국시민권연맹의 보고서 표지와 목차

이상과 같은 항목마다 Bork판사의 행적과 인식, 세계관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있다. 이 항목은 대체로 한 판사가 여러 판결과 저작들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국가, 교회, 개인의 상호관계, 사법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인식과 견해,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게 해 주고도 남음이 있도록 망라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항목마다의 점검을 통해 그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평소의 소신과 성향으로 보아 개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미국의 대법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측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접근가능한 모든 그의 저작과 판결 등에 기초하여 Bork판사의 견해, 그 뒤에 있는 그의 사법적 철학을 제대로 범주화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기록에 의해 우리는 Bork판사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일치하는 사법적 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를 수용하는 광범한 범주안에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Bork판사를 Felix Frankfurter, John Harlan, 최근의 Lewis Powell판

사들의 예와 같은 보수적 사법전통 내에 위치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Bork판사는 강한 지적 신뢰를 가질 만하지만 충분치는 않다. 상원은 후보자의 사법철학을 검증하고 그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대법원의 기능과 일치할지를 결정할 헌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 기준에 비추어볼 때 Bork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거부되어 마땅하다.”

애독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법감시」 편집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사법감시」와
구독카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구독료 및 후원금 납부방법 구독료 : 1년(6회) / 2만원

• 지로납부 지로용지(통지서란)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시중은행에 납부 (지로번호: 7615524)

• 무통장입금 예금주: 문혜진

국민은행 015-21-0808-184 제일은행 325-20-123107
상업은행 192-08-324269 농협 094-02-092853

대법관 임명시 인준청문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

천낙봉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간사)

임기 만료되는 대법관

1997년 2월 김석수 대법관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그 후임의 새로운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법조계 주변에서는 많은 말이 오고 가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는 말로부터 상당히 심각한 입장의 말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무성하다. 이제,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접근해 볼 때가 되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 및 그 적용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된 사법부 최고기관이라는 단순한 법적 의미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징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조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항상 어떠한 자질과 인품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는가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새로운 대법관 임명절차에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호응하여 각계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의 비민주성과 국회의 대법관 동의절차의 형식성에 대한 그릇된 관행을 청산하려는 의지에서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근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2항)는 헌법 취지는 사법부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정감사의 비판과 감독 기능을 가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헌법 제2조) 국민들은 국정감사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고 국회는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법관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국민들의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정감사의 비판, 감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작용인 법관의 유효적절한 배치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국정조사의 한 방법으로 제청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국회가 가지는 임명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회, 국회의 본질적 권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헌법 제61조 제1항),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또한 위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국회법 제65조).

현행 법체계상 인사에 관한 동의는 청문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인사에 관한 동의안을 다른 의안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미국 하원의 경우에는 “기타 규칙이 부여한 기능과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만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상원의사규칙은 하원의사규칙보다 더 포괄적이다. 또한 국회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 구성에 관한 일정한 비판과 견제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권한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러므로 국회법상의 청문회 관련 조항은 일반 청문회에 관한 조항이므로 특정



상원 법사위에 출석한 Bork판사. 앞줄 왼쪽 세번째가 Bork판사이다. 왼쪽 옆은 Ford대통령이며, 뒷줄에 Bork판사의 가족들이 앉아있다.

사안인 인사청문회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국정의 비판, 견제 기능이 국회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대법원장의 독점인사 배제여야

미국 헌법은 우리 헌법 규정과 같이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판사 임명 방법이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될 모든 연방 정부관리를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구해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이 규정을 단순히 동의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용함으로써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첫단계부터 인준시까지 특히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1930년대 이후 관행이 되어 왔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입법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실제로 작현재의 인사는 고시 기수 및 개인적 친분 등 전근대적인 기준에 따라 행하여 질 뿐이고 대법관추천회의와 같이 제도적이고 공개적인 절차가 배제되어 일반 국민의 여론이 차단된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이 제대

로 반영되는 국회의 동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대법관의 임명절차 과정에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어야 한다.

앞서본 여러 근거에 의하여 현행 법체계상으로도 인사청문회가 가능하지만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의 임명 기준

법조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관의 임명기준을 포괄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뚜렷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대한 전문적식견과 교

양을 갖춘 사람, 소신과 용기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거나 헌신한 사람, 청렴한 생활과 겸허한 행동으로 국민과 법조계의 존경을 받는 사람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모두 수긍하고 있다고 본다.

1994년 7월에 있었던 대법관 6명에 대한 임명에서 대법원장은 당시 대한변협회장등 재야법조 원로 몇 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의 외양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견수렴이란 다양한 차원에서 각계의 대표가 참가해 개방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밀행적인 의견수렴은 크게 미흡한 것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그동안 법관의 인사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각 법관들의 신상 및 자질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전산망이 현대화하면서 그 수집이 용이해지고 있다. 앞으로 언제든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이러한 자료가 청문회에 제출될 것이다. 또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대법관의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한시바빠 도입되어야 한다. 

미납 추징금 3천억원, 걷을 방법 없다

추징금 미집행액이 3천3백억원을 넘는다

제18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 8월까지의 추징금 미집행액이 3천3백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1월~8월까지만 보더라도 벌과금 징수실적이 50%에 달하는 반면, 추징금의 징수실적은 11.6%밖에 되지 않아 추징금의 미집행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 징수실적을 지검별로 살펴보면 대전고검 100%를 비롯하여 고검은 징수실적이 100%에 달하지만 나머지 지검들은 광주지검 3.9% 등 대부분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납한 추징금 중 기한 도과로 인한 집행불능액이 93년에서 96년 6월까지만 1천6백53억원에 달해 추징금 징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추징금 5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93년 이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183건이나 되어 447억여원의 추징금이 처분되고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청별 추징금 징수실적 및 미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청명	징수실적 (96.1월~8월)		96년 6월기준 징수불능 현황	
	실조정액	징수실적(%)	건수	금액
계	385,201	44,773(11.6)	10,674	16,231
대검찰청	999	121(12.1)	0	0
대구고검	81	81(100)	0	0
서울지검	193,665	29,550(15.3)	25,887	8,822
수원지검	28,146	2,417(8.6)	10,238	737
춘천지검	771	229(29.7)	84	68
청주지검	1,563	55(3.5)	810	906
대구지검	22,148	541(2.4)	11,047	919
부산지검	112,539	8,332(7.4)	10,134	3,118
광주지검	5,608	219(3.9)	2,385	479

대규모 부정부패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이 지난 8.15 특별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얻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사면이 되어도 추징금을 납부해 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결과가 되어버렸다. 산업은행 대출비리 사건의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이 추징금 3억5백만원 중 1억 6천9백만원을 미납하였고, 축협비리사건의 명의식 전 축협중앙회 회장이 2억5천여만원을 미납하였다. 이들 이외에도 지난 96년 2월 특별사면된 심명구 선광공사 대표가 벌금 1억 5백만원을, 이경희 안산관리공단 이사장이 1억1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수서사건 이원배 전 국회의원이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자진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의 다른 징수 방법이 없어, 추징금 징수인력 보강 및 추징금 징수방안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Photo News



안기부법 개정, 시대착오적인 발상

최근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추진에 반대하여 12월 17일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들이 신한국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권력은 법률과 시민에 의해 견제되어야

-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 -

참여연대는 제181회 정기국회를 맞아 권력감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내용의 '시민입법운동'을 펼쳤다. 사회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제·개정되어야 하는 법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 참여연대는 정기국회에 부패방지법,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상속세법, 공정거래법, 검·경 중립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의 제·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부패방지법〉

거듭되는 부패행렬 매듭지어야

96년 1월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벌여 온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는 3만여명의 시민들과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에게 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7일 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은 종합적인 반부패기본법으로서 돈세탁 규제, 내부비리제보자보호, 공직자 윤리규정의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하여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 100인 서명'을 발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시민서명운동 등 지속적인 부정부패추방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경제력 집중 약화,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96년 8월 7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안은 여러가지 미비한 점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는 다른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민변과 참여연대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약화'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장치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약화를 위하여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해당요건을 완화시켜 독과점기업에 대한 행위의 제한을 폭넓게 적용하였다. 그래서 현행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인 경우에 인정하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3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분의 1이상 또는 5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3분의 2이상인 경우(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미만인 자는 제외)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써 일정한 행위에 제한을 두었다(개정안 제2조 제7호).

다음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고 채무보증해소기간을 단축하였다. 이는 계열사로 넓게 확장되어 있는 재벌들

이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방법으로 금융여신을 독점하여 경제력의 집중수단으로 이용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기업의 총체적 부실화를 막기위한 것이다. 그래서 공정위 개정안에서 규제대상 채무보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채무보증'을 그 개념이 너무 애매하고 경쟁질서의 구축이라는 공정거래법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삭제하였다(개정안 제10조의 2).

불공정거래에 의한 피해자 보호장치의 보완을 위하여 우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당사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자로 보고,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나 피해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도록하여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어 공정위 심의절차에 참가하거나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 제2조 제11호).

둘째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공정위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감시하고 관련자들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범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였고, 공정위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해야하는 기간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경우는 그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분내용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판단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개정안 제49조 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제53조, 제53조의 2).

세째로는, 불투명하게 행하여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공정위의 시정권고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그 업무의 적법성을 강화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하였다(개정안에서 제51조 삭제).

넷째로는, 피해자의 소권행사는 공정위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

행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개정안에서 제57조 삭제).

다섯째로는, 범위반자에 대한 고발이 공정위의 독점사항이 되어 행정기관인 공정위의 판단에 의하여 형사처벌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불합리하고, 피해자가 형사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5항에도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정위의 고발독점권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소비자들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에서 제71조 삭제).

여섯째로는, 공정위개정안은 형사벌을 없애고 과징금만을 상향조정하여 그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되어 형사처벌은 존속시키고 과징금만을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66조, 제67조, 제68조). 그리고, 공정위 개정안에서 규정된 긴급중지명령과 이행강제금제도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긴급하게 중지명령을 할 필요성이 적고,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이 얼마든지 그 이행의 강제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이는 도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상속세법) 고액자산가들에게 과세 강화해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을 위한 개정이라고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그 면세점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고액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재경원의 개정안에 의해 세부담경감을 가장 높은 경우가 70억원을 상속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본래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연대의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개정청원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합산과세기간의 문제로 현행은 상속인은 5년, 상속인 이외의 자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



10월 25일 참여연대가 개최한 「상속세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

은 평생 또는 10년의 기간을 규정하는 외국의 경우보다 훨씬 짧아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을 삭제하였다.

둘째로, 재경원안은 상속과 증여의 경우를 통합하여 최고세율이 40%가 되도록 규정하나, 이는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도 너무 낮은 비율이고, 소득세와 동일하므로 합리적이지 않아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여 최고세율은 60%로 상향조정하였다.

셋째로, 공제제도를 개편하여 상속공제, 증여공제, 자녀공제, 장애자공제 등의 경우에 재경원 개정안의 공제액이 너무 높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고, 복잡하기만 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물적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공제를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재경원안에서 신설한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자산을 특별히 우대할 근거가 없으며, 고액자산가일수록 더 유리한 제도가 될 수도 있으므로 도입해서는 안된다.

넷째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 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내부거래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한 재경원안을 유지하고, 보유주식을 5%로 축소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불이행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에는 의결권을 박탈하고, 출연재산과 특별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1/3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부터 1/100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했다.

다섯째로, 지배주주 소유주식에 할증평가하는 범위를 상장법인 등의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그 평가율도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주가가액의 평가방법도 보다 현실화하였다.

그 외에도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40% 할증과세하고, 금융자산 일괄조회제도를 부활시키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노인복지법〉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시급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어 노인의 복지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노후에 대하여 무방비상태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인 차원의 대책은 미비한 수준이다. 노인복지를 위한 법률로는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생활보호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 각각이 개별적 필요에 의해 제정되어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필요에 따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에서는 이에 따른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은, 노인복지문제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복지서비스'로 인식하자는 점, 그에 따른 '임의규정 및 선언규정들의 강행규정화' 그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다.

현행의 노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은 후손이 없거나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노인들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취지이지 노인들의 기여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아니므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복지조치'라는 용어는 노인복지문제를 행정청의 일반적인 처분으로 받아들이는 우려가 있으므로 노인들

의 청구권이 인정되는 용어인 '복지서비스'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나 '노력(조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규정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에 의하여 노인복지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이 거의 없는 지금과 달리 국가의 재정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의 보장을 위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소득보장밖에 존재하지 않는 현행제도를 넘어 보편적인 노령수당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의료보장에 대하여도 장애인과 같은 정도의 특별급여가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주거보장이나 대안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사문화되어 있는 현행법을 보완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체제와 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 서비스의 권리성을 인정하여 권리구제절차와 벌칙규정들도 마련하여야 한다.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 사회보장법으로 거듭나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생활보호법은 헌법에 규정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수준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1인당 월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의 중점은 '생활보호청구의 권리성 인정', '보호대상자 범위의 확대' 그리고, '실효성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의 간이화'에 두어졌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에 대한 수급권자로서의 권리성을 인정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를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률명칭을 '사회보장법'으로, 피보호자를 '수급자'로, 보호라는 용어를 '보장'으로 바꾸는 등 용어부터 대폭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개개인의 나태 등에 의하여 보호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현행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차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인은 불문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도시 전입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제한]이라는 지침에 의하여 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제한되는 것도 반대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 당사자는 돈이 없고 교육정도가 낮으며 보호가 시급할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수절차가 필요하므로 권리구제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에 전담부를 만들고, 인지대를 면제 또는 할인하며, 국선변호나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처분제도를 확대하며,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사전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이다. ㄸ

이젠 법원공보나 판례총람을 뒤적이지 않는다

「킹스필드 3.0」은 1973년부터 1995년 까지의 대법원의 판례전문에 1989년부터 1995년 상반기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더하여 여러분 앞에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 더욱 다양해진 검색방법
 - 민사, 형사, 가사, 특허, 세무, 행정등의 특정분야별 검색 기능
 - 선고날짜별 검색 기능
 - 해당 판례제목의 판시와 동시에 판례검색 기능
 - 저장·편집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 사용환경
 - 486DX / CD ROM DRIVE / 4MB / 한글윈도우즈 3.1이상



레포트 쓸만한 재판들

이 글은 이화여대 「법과 사회정의」 과목의 수강생들이 제출한 법정참관 리포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뜻밖의 법정이 서보가까지

11월 15일 서부지원을 방문하였다. 407호 법정을 참관했고, 대개 10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재판의 연속이었다. 대부분 판사와 검사가 심문을 하고 사실확인을 했다. 짧은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동안 피고인은 등만 보인 채 앉아 있다가 가끔 판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피고인 한마디 하십시오”라는 판사의 말에 대부분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재판을 끝냈다.

재판 중에 나는 증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뭔가 적고 있는 것을 본 판사가 재판을 모두 끝낸 후 나를 앞으로 불러세웠다. 학생 같아 보이는데 왜 왔으며 뭘 적고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뜻밖에도 법정에서 게 된 나는 “대학생인데 수업시간의 레포트가 공판 참관 보고서라 공판내용을 받아적고 있었다”고 하니 “오늘은 별로 레포트로 써낼 만한 공판이 아니었으니 목요일에 제법 오랫동안 진지하게 하는 공판을 참관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다. 또 법정을 나오려는데 문 앞 책상에 앉아 있던 정리 아저씨가 따라 나오시며 어디 대학생이며 구체적으로 레포트 내용이 무엇이라고 물으시며 고맙게도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까지 물으셨다. 비록 그 날 열심

히 참관한 공판이 별로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법원 종사자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백운경〉

어려없이 메모는 안된다

지난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마포에 있는 서부지원에 가서 공판 진행과정을 참관하였다. 처음에 참관한 407호 법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내용은 간통죄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공판절차를 간단히 메모해 두어야 할 것 같아 수첩과 펜을 들고 있었는데, 변호사의 심문이 진행되던 중 판사가 갑자기 “저 앞에서 메모하는 학생이 누구죠?”하고 나를 지적했다. 순간 너무 당황하였고 “견학왔다”고 대답하자, 법정에서는 허락 없이 기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그냥 듣기만 하라고 하셨다. 뒤에 앉아 있던 정리가 와서 보고 가고, 죄 지은 사람이 된 듯이 떨리기까지 했다. 나는 민망함에 법정에서 금방 나왔다. 나오는데 정리가 따라 나와서 법정 문 옆에 쓰여진 법정 내에서의 사진촬영, 중계금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다. 중요한 재판에서 기자들이 메모를 하고 그림까지 그리지 않는가. 기록이 왜 금지가 되는지, 공개된 재판인데 그런 것은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박현은〉

“여자는 그렇게 아니야”

10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서울 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명길, 판사 황용경, 김창보) 재판을 참관했다. 다루어진 사건 중 하나는 피고가 술집에서 만난 한 여성을 외딴 곳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피고는 불구속 상태였다. 이 날은 피해 여성이 사건이 있는 직후 전화를 한 피해 여성의 친구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재판 진행과정에서 재판장의 어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재판장은 “자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도... 자네가 불구속으로 있으니 나도 보기좋아...”라는 말부터 “이봐, 여자는 그렇게 아니야”라는 말까지 그리고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하자 “뭐, 당신이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나 본데 많이 해보슈”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였다. 게다가 “내가 볼 때, 이건 아무리 봐도 분명 자네가 죄를 진거야”라는 말은 하는 등 자신의 주관을 재판진행에 지나치게 많이 표현하였다.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유수현〉

피고인과 변호인, 의사교환 안돼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판사 서태환, 신숙희)에서 진행된 절도미수사건을 참관했다. 변호인과 검사가 검찰측 증인에게 심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어나 증인에게 계속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고인이 일어나서 항의하자 재판관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나중에 얘

기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도 억울하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에서 흔히 보는 미국의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옆에 앉아 있는 변호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을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이 재판에서도 피고인

은 자신의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말해야 했고, 그것은 재판관과 검사에 의해 저지되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옮기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좌석이 재배치되면 다시 한 번 재판방향을 해 볼 생각이다.

〈이화여대 외국어계열 박지윤, 조한나〉

전국 교정시설 대부분 정원 초과, 900명당 의사 명꼴

제18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 9월 12일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59,6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정원인 57,360명보다 2,300명을 초과한 수치이다. 이 중 청주교도소는 정원의 477명을 초과수용하고 있으며, 영등포교도소도 정원의 379명을 초과수용하고 있다.

정원초과 이외에도 의료진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의사의 수는 900명당 1명꼴이고, 취업장과 수용실 복도에 설치된 난로 이외의 냉난방시설은 전무한 형편이다. 93년 이후 96년 8월까지 교도소 내 병사가 85건이나 일어나 재소자의 권리가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신축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수용시설에도 자연통풍 및 채광을 최대한 이용' 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형자들에게 휴가를 보낸다는 교정선진국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재소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형법을 확고하게 권리와 의무의 규범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 교정시설 및 정원 25% 초과시설 수용인원 현황

단위: 명

소 별	구 분	수용정원	수 용 인 원 (초과 %)		
			현 원	기 결	미 결
계		57,360	59,660	32,901	26,759
서울지방법교정청		20,610	22,401	8,130	14,271
대구지방법교정청		19,000	19,054	12,293	6,761
대전지방법교정청		8,800	8,568	6,016	2,552
광주지방법교정청		8,950	9,637	6,462	3,175
홍성교도소		600	752(25.3%)	421	331
대구교도소		2,700	3,415(26.5%)	1,511	1,904
성동구치소		2,000	2,533(26.7%)	311	2,222
영등포교도소		1,400	1,779(27.1%)	1,195	584
경주교도소		500	671(34.2%)	260	411
청주교도소		1,200	1,677(39.8%)	927	750

전화교환원 차등정년제 인정판결에 대해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13589판결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유감

오장진(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지난 8월 23일 대법원은 한국통신 전화교환원의 차등정년제에 관한 상고심판결을 내려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일반직 중에서도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정년 등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8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동 판결은 차등정년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과 동일인인 한국통신교환원인 김영희씨가 82년 12월에 43세로 규정된 교환직렬의 정년이 차별정년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7년만인 87년 9월 승소, 53세로 정년을 연장시켜 차별정년의 부당함을 인정받은 판례를 뒤집는 효과를 내는 것이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양 판결의 결과가 달라진 것은 이번 판결이 전화교환직렬이 실질적으로 여성전용직종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전제에 근거한 데에 있다.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5조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라는 표

현과 남녀고용평등법 8조 1항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은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헌법 11조의 평등권의 해석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바이다. 같은 직장내에서도 업무의 성격과 직종에 따라서 정년 등을 달리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본 근거가 과연 합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재판부는 우선 현재의 정년에 대한 내부적 평가를 선불리 긍정적 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당해 직장의 전화교환직렬 직원들 스스로가 젊은 사람의 채용을 원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87.1%)은 현재의 53세 정년이 적당하거나 오히려 더 단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87년 9월에서 94년 5월까지의 교환직렬 퇴직자 869명 중 53세 정년에 의하여 퇴직한 사람은 1명뿐이고 나머지는 조기퇴직했다는 점을 그 논거로 든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재판부는 조기퇴직의 원인은 업무의

과중이나 근무조건의 열악함 또는 장래성 결핍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은 정년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조기퇴직이 빈번했다는 것을 곧바로 낮은 정년의 정당화근거로 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신규인력의 채용희망은 회사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업무과중을 겪고 있는 근로자측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정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공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어느 직장에서건 마찬가지로 정년은 승진과 인사적체의 문제와 관련되므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빠른 정년을 선호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이 판결 이후에 한국통신노조가 판결에 반박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재판부의 이해와는 달리 오히려 당해근로자들은 차등정년이 적당하다고 보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하겠다.

교환직렬정년을 53세로 정한 동 회사의 인사규정(이는 동 회사의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은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

로서 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 역시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협의라는 것은 1987년 노조 집행부 시절의 협의이지 현재의 노조 집행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노조측의 주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95조 1항) 그 때의 의견은 현재의 근로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의견으로 해석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서도 옳다. 따라서 현재의 정년이 근로자의 의사라고는 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법령에 반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97조 1항) 그 인사규정은 정년차등금지원칙을 천명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성전용직종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다른 일반직 직원의 정년과 달리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 본질적으로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릇 합리적 차별이 정당화되려면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장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무 자체의 성격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원초적·물리적인 조건상의 제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여성들이 전화교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53세 이후에는 본질적으로 적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령의 여성근로자가 교환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라

고만 하였지 53세 이상의 여성이 교환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논거는 전혀 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여전히 앞서 언급한 조기퇴직의 경향 등에 입각하여 그러한 의문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대신 재판부는 회사의 사정을 차등정년의 근거로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교환직렬은 1982년 이후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공서열제를 택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비용이 증가하는 등 회사의 부담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이른 정년은 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주장은 1994년에 인력부족으로 한 차례 신규인력을 채용한 바 있고 교환직렬직에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인력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현 실정과 다른 것이다. 또한 자동화로 인해 잉여인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차등

정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며, 그것은 기업형태의 변화와 배치전환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회사측의 사정은 결코 차등정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

최근 한국통신 전화교환원의 30%에 달하는 인원이 직업병인 경견완장해를 겪고 있거나 우려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것으로, 교환원 1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교환원의 조기퇴직을 부추켜 왔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점을 도외시킨 채 차등정년을 내재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재판부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아서도 정당화되기 힘들며 그 근거가 박약하다고 할 것이다. 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공동연구진이 사법10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의 위상을 찾고자 만든 책입니다. 연구진은 이 책에서 사법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헤치고, 외국 사례를 풍부하게 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쟁점마다 좌담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모아 분명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참여필진 : 김제완(변호사), 박원순(변호사), 박은정(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이창원(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차병직(변호사),

한인섭(서울대 법학과 교수), 황승홍(서울대 법학과 박사수로)

• 박영출 출판사 발행 / 264쪽 / 값 9,500원

• 문의 전화 : 02-3673-4462, 팩스 : 02-3672-2478



한건주의' 수사, 춤추는 언론

편집부

지난 7월 16일자 서울신문에는 「좌경조직 14명 구속/21세기 진보학생연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경찰청 보안국이 대학가 좌경세력인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소속원 11명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하였고, 국군 기무사도 현역병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라는 것이었다. 경찰이 발표한 구체적인 혐의는 "이들이 지난 94년 9월 영남대에서 대학가 좌경조직 핵심 주동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21세기 연합』을 결성하고 기관지 '진보' 등 2백여가지 문건을 통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해 왔으며, 의회·군대·행정기구 등 국가 주요기관내에 혁명진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는 강령을 채택했다"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중앙일간지가 이러한 발표내용을 거의 그대로 보도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런데 11월 24일자 서울신문에는 7월 16일자 기사와는 도저히 양립될 수가 없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즉 「서울대 총학생회장 비운동권 북학생 당선」이라는 제목하에 "지난 8월 연세대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한총련주류인 민족해방(NL)계열의 과격·폭력노선에 반기를 들고 '한총련 개혁'을 내건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의 후보가 39.9%의 득표율로 다른 4명의 후보를 물리쳤다"는 것이다.

같은 신문에 실린 이 두 기사는 하나의 학생단체가 불법적인 "이적단체"인 동시에 평화적인 "비운동권단체"라는 너무도 상반된 판단을 보여주고 있어 읽는 사람을 혼란에 빠뜨린다.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불과 4달 사이에 어떻게 이적단체가 비운동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한편 11월 25일자 조선일보는 "『21세기 연합』은 ... 문민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학생운동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들은 그동안 학생운동을 주도해 온 주사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화염병 폭력시위를 자제하자고 주장, 운동권과 격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통일문제에서는 남북한을 동시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월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에는 북한의 공식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보도하였으며, 11월 23일자 한국일보도 같은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친북도 아니고 폭력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도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입장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결성된 학생단체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향을 가진 공개적인 학생단체의 존재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를 뿌리에서부터 부인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에서 "진보"내지 "사회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적행위"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경찰청이 발표한 구속자 중 5명이 혼방 내지 구속취소로, 나머지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모두 석방되었다. "용두사미"의 전형적인 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였고 일부 언론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경찰의 발표만으로 피의사실을 가정사실화하는 무책임한 부실보도를 한 셈이다. 수사기관이 사시때때로 발표하는 이러한 수사결과와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언론에 의해 무고한 학생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언론이나 수사기관이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일관성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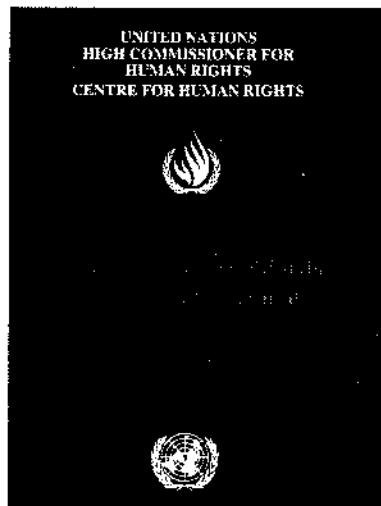
시급한 경찰 인권교육

편집부

OECD 가입으로 당장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여타의 국가들보다 성숙된 면모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편견과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국내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훌륭한 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하여 미 국무성, 앰네스티등 많은 국제인권기관과 단체들에 의하여 불명예스럽게 거론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도 법의 집행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의 개선을 위한 과제 중 첫 번째로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교육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전체교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그 내용도 상당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경찰을 위한 인권 포켓북(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 A Pocket Book on Human Rights for the Police)』은 우리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포켓북은 그간 경찰이나 기타 경찰활동에 종사하는 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경험과 30여개국의 국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된 것인데, 경찰관들은 이를 항상 휴대하면서 올바른 경찰관 행사의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다.



포켓북의 표지 (크기12.5×9Cm)

위 포켓북은 총 23개의 항목에 대해 수백가지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는데 일반원칙, 경찰활동, 그리고 책임이 그것이다.

일반 원칙 부분에서는 인권을 인간의 내재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천명하면서, 경찰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치적 견해·재산·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됨을 강조한다.

경찰활동에서 보면 수사, 체포, 구금, 강제력의 사용 등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자주 문제되고 있는 총기사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총기의 사용은 경찰관 자신이나 타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그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총기사용의 강고, 일정한 시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경관은 면책된다. 그러나 위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용서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여름 경찰간부의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총기 사용발언'은 위와 같은 총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상당히 역행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총기의 사용을 포함한 경찰의 강제력의 행사는 정책이나 입법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의 불가침이라는 바탕 위에서, 최소한의 제한적인 행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본래적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불법적인 강제력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나 변명도 허

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 여성의 권리, 그리고 망명자나 외국인·범죄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보호에 결코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증대되면서 이들의 보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유난히도 강한 한국인들의 배타적인 국민정서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배척되고 법적으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관계를 조금이라도 맺어본 외국이라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극단적인 반한감정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는 선진 국제사회로의 진입에 있어서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자의적인 차별도 철폐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책임에 대해서는, 경찰은 사회공동체에 봉사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한다. 한편 경찰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를 증대시켜 사회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창조적인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경찰이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관으로 자리잡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결단에 의해 경찰권의 행사가 좌우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인권침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론이다. 상관도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

으면 책임을 져야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같이 인권은 경찰권의 어떠한 자의적 행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는 존엄한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의 포켓북은 그 내용의 간결성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활동지침으로 일선 실무에서 잘 활용된다면 인권보장의 나침반으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양한 인권교육자료가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미 발간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인권교육자료와 더불어 정규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 의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경찰 충기사격, 문제없나

장운선 (참여사회 기자)

1 8,571명 충기살인 사망. 18,940명 충기자살. 1,521명 오발사고 사망. 지난 93년 미국의 충기사건 통계다. '매 2시간 마다 1명꼴로 어린이가 충기 때문에 숨지고 있다'는 미국에서는 충기류 합법소지가 팽창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해 이미

30년전부터 충기 구입 및 소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총련사태가 후반부로 접어들때 박일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충기사용 확대방침"을 언론에 공표했고, 뒤이어 '공권력도전행위의 제압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실수는 불문에 부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말은 실로 가공할만한 사건의 소지를 남겼다. 이런 와중 경찰의 오인충기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지난 9월 5일 수원 매산로1가에서 뺑소니범을 쫓던 신부호 씨(42



세, 권선구 금곡동)와 지나가던 최정연 씨(21세, 여, 협성대2학년)가 수원 남부경찰서 고등파출소 이성남 경장(29세)이 쏜 총에 맞았던 사건이 있었다. 그로 인해 신씨는 중태에 빠지고 최정연 씨도 손바닥을 관통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중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총기사용과 관련한 규정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라고 되어 있고 또 정당방위나 상대방이 무기 흉기 등을 갖고 있을 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뿐 아니라 총기사용수칙은 총구방향 조준부분 공포탄과 실탄의 장전 및 발사 요령을 부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병원에 나타난 한총련사태 수배학생을 붙잡기 위해 가스총을 쏘 입원환자들을 괴롭혔으며 청소년일행을 소란혐의로 연행하려다 실랑이를 벌이던중 공포탄을 얼굴에 발사,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됐다.

왜 이런 사고들이 연이어 돌출

되는 것일까? 아마도 이는 총기사용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사료된다. 총기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일선 경찰관에게서 들었다. 다음은 서울 D파출소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격연습은 어떻게 실시되는가.

1년에 기록사격 4번, 연습사격 4번을 실시한다. 그중 기록사격은 인사사고과에 포함되는 영역이다. 그 외엔 없다.

경찰관 총기 안전수칙을 말해달라.

1. 총구는 공중을 지향하고 2. 실탄은 장전 휴대(공포탄 2발, 실탄 3발) 3. 실탄 장전시 필히 안전장치 4. 발사시 2탄 공포발사, 발사시 상대방에게 경고 5. 조준시 대퇴부 이하

총기사용 확대방침이후 총기안전교육은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매일 교양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온대로 시킨다.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왜 그런 총기사고가 난다고 보는가.

말하고 싶지 않다.

일선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느끼기에, 총기사용 확대가 꼭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 걸 묻냐. 위에서 시키면 하는 것이지 좋다말다 무슨 그런 말이나. 그런 말 마라.

경찰의 총기사고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 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93년 5건, 94년 8건, 95년 10건, 96년 9월 7일 현재 12건으로 지금까지 총 35건의 총기사용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총기사고에 대한 대책을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물었다.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사격연습을 늘리려고 생각중이다. 그동안 고정표적연습만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이동표적, 상황부여 표적연습을 실시하고 또 영상시뮬레이션에 입각한 교육도 마련중이다. 또 각 파출소에 신형장비를 구비할 방침이다. 레이저 편이 나가 사람이 맞으면 잠깐동안 정신을 잃게 만드는 전자총 도입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말 그릇된 총기남용을 막는 길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뿐이다. 두 요건을 통해 경찰은 정확한 상황판단력을 기르고 능수능란한 총기사용기술을 숙지해야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여타 다른 이유로 두가지 조건을 견지할 수 없다면 과감히 총기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총(공권력)으로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양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통계의 허와 실

한상희(경성대 법학 교수)

현상의 서술방식을 명사적인 것과 동사적인 것으로 나눈다면, 미세한 차이만을 가질 뿐인 현상들을 굳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획하고 단언하고자 하는 방식이 전자에, 어떠한 기성의 준거에 사상(事象)들을 고착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진리/허위, 선/악의 명명법과 같이 중간적 존재가 누군가의 기획에 의하여 배척되어 버리는 배제의 논리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인간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을 일도단언적으로 규정하는 통계는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통계가 취합과 버림이라는 재단(裁斷)의 도구로 변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 그 통계의 마술은 지배와 권력의 욕망에 유용한 '정당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부통계처럼 「사법연감」도 이러한 단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통계기법상의 미숙이나 이해부족인지, 또는 별도의 통계목적 내지는 활용방안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로써 1년간의 사법 실태들을 보고자 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의 존재의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자료의 1996년판을 보기로 하자. 사건별, 지역별 등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변수에 대한 빈도수는 어쨌든 읽을 수는 있다. 하지만, 기간이나 금액, 형량 등과 같이 연속적인 변수에 대하여는 너무도 간단한 구획적 사고가 드러난다. 예컨대, 민사본안사건 소송물 가액별 통계자료는 그 구간 자체가 500만원단위에서 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그러다가 귀찮은지 아예 10억원 이상의 단위로 뛰어 버린다. 이로써는 인구나 소득의 분포에 따른 제소성향의 여하에 대한 분석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구간의 상승에 따라 빈도수가 급감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대로 참고 읽어 나갈 수는 있다.

하지만, 기간이나 형량이 이런 식으로 1개월단위에서 1년, 2년, 5년, 15년과 같이 가속도를 붙여서 처리됨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예컨대, 민사본안의 제1

심 합의사건에서 평균 7.1개월만에 판결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그 계산방법을 보면 실측치가 아니라, 꺾꺾 뛰어 다니는 구간들의 중간값으로 계산한 결과임을 '선언'하고 있다. 과연 이런 계산법이 타당할 수 있는가? 중간값의 대표성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심리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진행되는 현상은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현재 관심의 대상인 집중심리제의 효과는 이 자료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며, 예외적인 사건들이 이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인신구속은 전통적으로 사법작용에서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사법연감에서는 죄명별 영장발부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법원별로만 분류되어 있을 뿐이다. 법관 1인당 부담건수도 마찬가지이다. 지방법원 평균 본안사건 786.7건을 처리하고 있는, 초인적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당 몇 번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사법연감」은 우리의 사법에 관하여 손쉬운 자료획득이 가능한 유일한 통계집이다. 그것이 있기에 대충 일관만 하여도, 변호사법위반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대비 자유형의 선고비율이 강력범을 제외한 여타의 그 어떠한 형사범보다 높음을 알 수 있고, 쉽사리 왜 이런가? 라는 의문을 떠올리고 또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해 볼 수 있다. 통계는 추상화와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통계속에 숨어 있는 미세한 인간사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때문에 현상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얼마든지 양산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그런 만큼 그 통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분석과 평가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연감」의 통계자료들이 단순히 사법부 홍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사법정책의 수립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독자지향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소송의 새 장을 열자

장소영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간사)

일 상생활에서 국가 혹은 사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일반 시민은 소송, 고소·고발,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어렵다. 피해가 무척 작은 것이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기도 있고, 손해의 원인이나 피해자의 규모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소송에 큰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게다가 피해자가 “경찰서 문 앞에도 가 본 일이 없는” 선량한 보통의 시민들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기도 어렵고 그 요건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항상 얼마간의 손해를 보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공익소송’과 ‘공익법’은 개념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률용어도 아니다. 1960년대 이후에 범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일련의 흐름을 가리키는 말로 흩어져 있는 이익(diffuse interest)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운동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Public Interest Law Group이나 영국의 Law Centre가 이러한 공익법운동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망원동 수해 손해배상 소송’과 1992년 ‘백화점 사기세일 소송’,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 ‘국민연금기금 운용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여러 형태의 공익소송이 제기되었고, 일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익소송이라는 용어 자체는 참여연대가 지난 1994년 9월 공익소송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만들어지고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에서는 몇차례의 공익소송의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지난 11월 22일 「공익소송법 제안설명회」를 갖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공익

소송법’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공익소송이 수행되기 위한 소송법상의 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한 개인이 제기할 수 없는 소송의 경우 공익단체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거나 집단소송의 문제,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문제, 시민단체의 활동비용과 공익소송 수행 변호사의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익소송법’의 필요성과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서초구 현대아파트는 왕복 4차선 도로의 이면 약 15-20m안쪽에 15개층 2개동 약 24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현대아파트 앞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한 나대지를 미주산업에서 경락받아 새로 5층의 사옥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그 건물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지탱하던 토류판이 무너져버리는 바람에 공사장 옆 토사가 흘러 내리고 인근 지반이 침하되어 공사장 서쪽에 있던 도로가 갈라지고 그 도로 너머에 있던 2층 상가 건물의 기층 부분이 가로로 약간 금이 가게 되었고, 앞 동에 있던 아파트 벽면이 사선으로 갈라지고 문짝들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근 상가와 아파트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는데 도대체 피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억울하지만 답답해 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 아파트 벽면 자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아파트 전체 벽면이 갈라졌다면 장기적으로 건물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아파트 값도 떨어질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그 비용을 부담하기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직접 소송을 하자니 개인적으로 바쁜 일

상생활이 있는데, 어느 세월에 법원에서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귀찮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할 것인가. 참여연대 공익소송법안에서는 이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공익소송은 각 피해자뿐 아니라 상근변호사가 있는 공익법운동단체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공익법단체가 참가를 꺼리는 사건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그 조

세가 면제되기는 하지만 변호사 수입료에 대한 약정을 할 수 없고, 약정

한다해도 무효이다.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도 문제는 있다. 옆집 사는 아줌마가 소송제기 사실을 몰라서 원고집단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데 어찌지, 서초구 현대

아파트 2개동에 사는 모든 입주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간다면 다시 원고를 바꾸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또 이사를 간다면, 엄청난 참을성을 요하는 소송이 되겠군. 그리고 사실 벽이 갈라진 동이라든 그 손해가 얼마가 될 것인가. 갈라지지 않은 동도 그렇고,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공익소송법안에서는 법원은 원고집단의 범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제소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 제소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원고집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하고 있고, 소송계속중에 변경이 있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는 원고집단에 가입 또는 탈퇴를 할 수 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공익소송법은 손해배상책임의 확정과 손해배상액의 확정을 나누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만 확정하고, 후에 조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각자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게다가 원고가 손해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추정되지도 않는 경우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데, 손해를 측정하기 위한 감정은 비싼 것인데, 그 비용은 각자가 모두 내야하나. 아무리 변호사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건설업에 대하여는 게 별로 없으면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까. 만약 회사에서 증거가 되는 서류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공익소송법안에서는 감정비용에 관하여 이를 국가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할 수도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공적기관에 감정을 명령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증거에 대하여도 특례를 두고 있어 공익소송에 있어서는 개연성이론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서의 표시, 취지에는 개략적인 주장만

공익법이란 소외집단이 사회에서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기회와 권력에서 비롯된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법'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외집단의 그리고 그들을 위한 투쟁의 일부이다.
- 라지브 다반 -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익소송법안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패소시도 원고측에 소송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행정청에 대하여 의무이행소송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지명령과 작위명령의 신청도 규정하고 있다. 

건강한 사법은 참여하는 시민이 있을 때 완성 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운영됩니다.

- 법조인 자료실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리
- 「사법감시」등의 매체에 실을 원고 작성
- 「사법감시」,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원통신 등 우편발송업무
- 법률상담실 상담접수 및 사법피해자 지원활동

Legal Justice Reform Network

이현 (zioman@unit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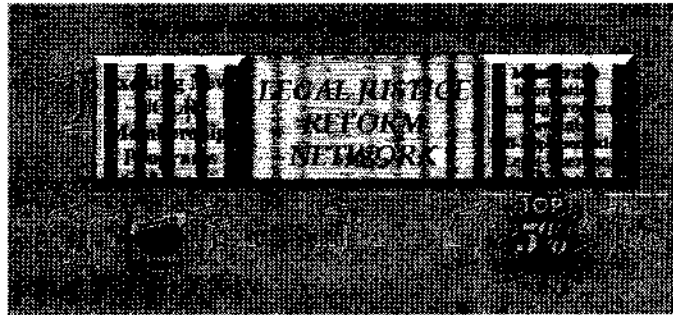
미국은 법과 법률가들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41명의 역대 미국대통령 중 24명이 법률가 출신이었고, 상원·하원의 50% 이상이 법률가 출신이다. 물론 연방정부, 주정부 관료들의 대부분도 법대출신들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1억 3천 5백만 건의 대인범죄가 발생하였다.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은 이미 연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9억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는데 그 중 10만 여건이 변호사 등 법률가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한다.

흔히 사법제도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근대 사법제도의 모순이기도 하다. 미국변호사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 중류층과 하류층의 80% 이상은 기본적인 소송기회도 갖지 못한다고 한다. 더구나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승소에 대한 보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은 변호사에 게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200여개의 단체들이 고비용을 비롯한 미국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일반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93년 네바다주에 만들어진 The United Citizens For Legal Reform(UCLR)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기로 하자.

UCLR의 설립목적은 두가지이다. 첫째 일반대중에게 미국의 사법제도와 자기변론법을 교육하고, 둘째 일반 국민의 힘으로 미국 사법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이루자는 것이다. 여러분이 UCLR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CLR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띄는 몇 곳을 방문해보면, 'Current Reform Activity'에서는 연방집단소송을 위해 200만명을 목표



로 일반국민의 서명을 받고 있다. 당신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서명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UCLR은 많은 비용이 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직접 자기변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Self-Help Law Products'와 'Do it Yourself Legal Kits for 50 states'에서는 이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Featured Books'에는 UCLR이 추천하는 책들이 소개되어 있다. 'UCLR Monthly Magazine'에서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치면 UCLR이 매월 발행하는 LEGAL WATCH를 받아볼 수 있다.

UCLR은 자체 인터넷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고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등록하여 계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색률 상위5%에 들 정도로 내용이 알차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관과 사회단체에서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거나 계획중이지만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홈페이지는 만드는 것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UCLR 홈페이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의 전원을 넣고 UCLR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기 바란다. 

UCLR의 주소는 <http://www.usa.net/uclr> 이다.

「사법감시」, 이렇게 본다

- 창간 1년맞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편집부

이 설문은 「사법감시」 창간 1년을 맞아 독자 중에서 법조인과 법학교수등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지난 9월 「사법감시」 제6호와 함께 2,500부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11월까지 수거된 51부의 설문결과를 아래에 싣는다. 적은 수이지만 「사법감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채워진 응답이었으며, 매우 소중한 의사표현이었다. 편집부에서는 지적된 13사람운데 건설적 의견은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준 여러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런 관심에 의해 「사법감시」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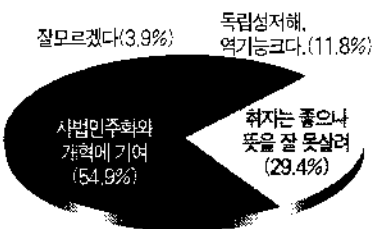
응답자 51명 중 직업에 따른 분포는 판사 17명, 검사 7명, 변호사 8명, 법학교수 13명, 기타 6명으로 판사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배포량에 비취볼 때 법학교수들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기간 별 분포는 '5년 이하'와 '10~15년'이 25.5%와 23.5%로 가장 많았다.

법조인 68.8% 「사법감시」 제호 개선율

격월간 「사법감시」라는 제호에 대하여 응답자들 중 52.9%가 '거

부감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제호 개선요구는 68.8%를 나타내 법학교수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한편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응답도 45.1%에 달했다.

「사법감시」를 읽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2.7%가 '매호마다 읽는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법감시」의 가독률이 상당히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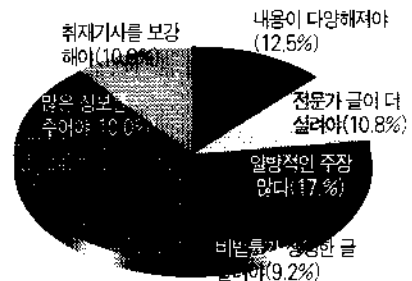


「사법감시」의 역할

「사법감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사법민주화와 개혁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뜻을 잘 살리지 못하거나 역기능도 있다는 견해도 40%에 달하여 「사법감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우려가 섞여 있음을 보여준다.

법조인의 반론 실려야 한다

「사법감시」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반론이 실려야 한다'는 지적이 29.2%로 가장 많았고,



「사법감시」개선점

'일방적인 주장이 많다'는 견해도 17.5%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내용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12.5%, '전문가의 글이 더 실려야 한다'는 지적이 10.8%를 차지하고 있다. '법조인의 반론 확보'에 대해서는 주관식 문항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변명이 아닌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다.

시민들의 사법감시활동 필요하다

시민들의 사법감시활동에 대해서 '사법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49%,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47%를 점해 사법감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4년 10월 창간하여 제7호를 맞고 있는 지금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활동이 이만큼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사법감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법감시」에 대한 의견 백태(百態)

이번 설문조사에서 보내져온 답신은 단순한 설문에 대한 답변을 넘어서서 다양한 의견들을 담고 있었다. 일부는 「사법감시」를 비판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격려하는 내용이였다. 대부분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사법감시」의 독자에게 참고가 되게 함과 동시에 편집방향에 참조할 생각이다.

판 사

■ 「사법감시」라는 용어 중 「사법」에 경찰, 검찰이 포함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법부」의 개념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제호를 「시민과 인권」이라고 개칭할 것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가?

■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고 이에 관한 판단과 의견개진은 다양해야

■ 법조인의 파일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과제이며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검찰은 수사기관에 불과하지만, 법원은 모든 분쟁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기관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법원의 업무 및 판사에 대한 사법감시 및 비판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였으면 한다.

■ 부당한 사법관련 사례를 좀더 논리적인 접근법으로 비판, 검토하여 (예컨대, 선진외국의 제도나 운용방안 비교 등)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①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논의를 유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공론으로 확산·연계시켜야 하리라고 봅니다.

② 또한 법조계에서 사실상 공지의 사실이나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는 사항들(예: 브로커와 연계된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사건소개비 수수관행, 법원·검찰의 인사비리, 법조내부의 반규범적 관행 등)에 대한 과감한 적시와 법원·검찰의 인사비리 거론의 활성화로 사법관련 taboo의 파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①제목에 관하여 - 내가 생각하기에, 법조인(특히 판사들의 경우)은 이 사회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사법감

시」라는 제목에서는 우호적이거나 애정이 담긴 시선을 느낄 수 없다. 불신과 적대감이 느껴질 뿐이다. 그것은 뛰어난 자질과 오랜 지적 연마과정을 거쳐 직무에 무한히 성실한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에 대한 모독이다. 제목을 「사법참여」 정도로 바꾸는 것이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거부감도 줄이지 않을까?

② 내용에 대하여 - 당사자들은 법조계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사건에 대한 자기위주의 사고로 인하여 터무니없는 오해와 피해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즉 거의 대부분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결론대로 판결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법조인들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 실체를 알고보면, 당사자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된 경우이다. 「사법감시」가 진정한 시민주화에 기여하려면, 보다 많은 전문지식의 습득과 공정한 자세-예컨대, 어느 당사자의 피해사례를 그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소한 그 기록을 찾아 열람한 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다음에 보도하는 정도의 성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법권의 실현에 있어서는 항상 패소 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의 보호는 중요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객관적인 검증없이 언론으로 게재할 때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직무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풀이식 주장이 가지고 올 여파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감시자로서 자유롭게, 소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감시자의 입장에서 악의가 없었다고 볼 때 왜 그와 같이 되는지만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검 사

■ 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사법기관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의 견해가 반드시 피해

자의 견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해당 당사자의 주장을 먼저 게재함으로써 문제된 사법기능을 일단 부정시하여, 향후 관련 법조인이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변명에 불과한 사례가 있음. 당사자가 불만을 갖더라도 담당 법조인 개인으로서는 양심과 법적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의 경우 쌍방의 견해를 동시에 게재하여야 할 것임.

※ 사법감시 편집위원인 박경자 씨의 관련 사건의 경우 (주변의 동료로서 불확실한 정보에 기인한 오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박검사의 결정에 개인적 사심이나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인의 아들이 사망한 것은 박경자 씨의 구속 이후의 사건이라고 알려진 바도 있듯이 동사건 처리와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법감시에 게재하는 것이 공적 기능의 감시자로서 공정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함.

■ 「사법감시」지의 취지대로 우리 법조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적은 판·검사수, 부족한 예산, 취약한 국민들의 일반적 법감정 등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미국의 예를 인용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피의자 대부분(범죄형 1년 이상의 범죄혐의자)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등 그 제도 전반이 우리와 크게 상이합니다. 우리의 사회인식은 무조건 세계 일류를 지향합니다. 법제도도 자신이 認知하는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제도의 부정적 측면은 아랑곳없이 장점만을 들어 우리 제도와 현실을 비판합니다. 우리 在曹의 법조인들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일류가 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제도나 사법현실이 사회전체의 수준에 비하여 낙후된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자기비하에 의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검찰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긍정적이고 사회발전·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변 호 사

■ 비법률가의 생생한 글을 많이 신뢰 편집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무의미한 내용은 삭제하고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은 보충토록 하여 가감조정 할 것이다.

■ 법원·검찰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조직적·체계적 감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일과성 사건정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법감시」는 우리 법조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더 널리 배포 요망

법 학 교 수

■ 뜻있는 노력이라 생각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 동참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 내용을 좀 더 풍부히 하고(특히 다른 잡지에서 취급 안한 영역을 강화!) 보다 폭넓게 보급되었으면 한다.

■ 사법부가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좀 더 지면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예컨대 「시민과 변호사」 정도의 분량을 유지하되 지면을 아껴서(2단편집 등) '작지만 내용이 풍부한' 격 월간지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 일반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사법제도, 관행 등에 대한 심층취재·보도를 요청함

■ 일반 시민들에 파고들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읽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일반시민과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필요하다고 봄.

기 타

■ 두께가 좀 두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늘리고 보관하기도 편하게...

■ 법원·검찰직 하위 공무원의 비리적결을 위해 노력 부탁드립니다. (급행료, 기타 수수료 명목의 민원인 특히 법률사무소 직원 상대의 금품수수 내지 종용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제목: 「사법비평」 정도라는 표현이 공정성 있는 제호로 생각된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 하급심 판결만 가지고 함부로 어떤 결론이 내려지고 그 결론이 선전되어서는 안된다. 반론이 반드시 실려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강간범으로 만들었다

차태명 (부산 북구 덕포1동)

1992년 7월 15일 오후 7시경 나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 두사람에게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나왔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나는 N다방 아가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질문을 받았다. 무슨 영문인지, 전혀 알아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아니면 그만”이니 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19일과 20일 경찰관 두 사람에게 연행이 되어 다시 경찰서로 갔다. 아무 잘못도 없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문제의 시간에 처와 함께 집에 있었던 내가 다방 여종업원을 강간했다니, 경찰의 수사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22일 ‘강간’이라는 죄목으로 구속되었다.

피해자라는 N다방 종업원이 92년 7월 15일 새벽 3시경에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했었지만 나는 그 시간에 가게 영업을 마치고 처와 함께 처의 증조할머니 팔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나의 그런 주장은 경찰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다. 게다가 다방 주인이 내가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해서 나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강간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억울했지만 경찰의 잘못이 검찰이나 재판 도중에는 바로잡아지고 나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1,2,3심을 거쳐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증인 이외의 증거물은 단 두 가지, 잠겨 있는 문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쇠젓가락과 피해자의 속옷 뿐이었다. 증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는 전혀 없었다. 정형외과의 진단서 한 장이 있었지만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 및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단서에 명기해 두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새벽 3시, “알리바이를 대라”

이후 안 것이지만 다방 종업원의 고소장에는 가해자가 누구라는 것이 정확히 지칭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 후 경찰에서의 몇 차례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가해자가 나로 지목된 것이었다. 진술도 이리저리 바뀐 것이 많고 정황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그렇지만 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새벽 3시에 집에 있었다는 것 말고 다른 알리바이를 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무던 애를 썼지만 간혀있는 나로서는 답답하기만 했다.

주축으로 지목받아 징역 4년 선고

가족들의 온갖 설득과 노력 끝에 3심이 끝나기 직전 다방 종업원과 여주인의 탄원서를 받아냈다. 피해자는 범인을 정확히 보지 못했고 추측으로만 판단하여 고소하였다는 내용을 자필로 써주었다. 유일한 증인인 다방 여주인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말만 믿고 별다른 생각 없이 내가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는 내용을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써주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3일 전 두 개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판단은 여지 없이 징역 4년이었다. 세상의 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도 좋은 것인지, 그 속에서 나는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알 립 니 다

지난호 「회원순례」- 빼앗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때까지...에 실린 글에서 한국정부가 이상기씨에게 실제 보수를 지급한 적이 없고, 서류상에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바로잡습니다.

3년 6개월, 암흑 같은 날들

나는 징역 3년 6개월을 살고 나왔다. 출소 이후 나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억울함과 분함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출소후 11개월이란 세월이 걸려 겨우 피해자와 증인을 쫓던 두 사람을 찾아내었고 왜 내가 범인으로 몰려야만 했는지 하나씩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취재 중 다방 종업원 애인과의 인터뷰에서 다방 종업원과 주인이 가해자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과, 나를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아 나눠먹기를 약속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도 확인되었다. 나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다방 종업원의 애인, 친구, 동료를 만나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녹음해 두기도 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도 만나보고 진단서를 끊어 준 의사도 만났다. 내가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나는 다방 종업원과 여주인 두 사람을 무고와 위증으로 고소했다. 고소한지 1개월이 되었지만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

아직까지도 나는 진정 법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 나는 단지 예외적인 희생양이었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실수로 이루어진 나의 원죄사건은 그 진실이 꼭 밝혀지리라고 믿고 싶다. 나 혼자만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지만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생업을 포기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이 벌써 몇 년째다.

무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나를 강간범으로 만드는 데에는 무고와 위증을 한 두 사람 이외에 검찰과 법원도 큰 몫을 담당했다. 한 사람에게 강간범의 이름을 지우고 4년 동안 차가운 감옥에 가두어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내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담당검사, 판사는 얼마나 신중하게 내 사건을 처리했을까. 내가 무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들도 유죄이다. 엇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내가 고통 속에서 보낸 시간이 보상될 수는 없다. 다만 내 명예를 회복하고 나의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다. 그날이 올때까지 나는 내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다. 

사법감시 통신문

수사편의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

지난 11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이영준씨로부터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그 내용은 9월경부터 수사가 진행된 과학기자제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11월 1일 북부지청 321호실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었다. 통보받은 시각은 오후 1시 30분이었으며 10여명의 참고인이 모두 도착할때까지 기다려 2시가 조금 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참고인이 많아 조사가 지연되어서인지, 얼마 후에는 참고인 5명을 한꺼번에 조사했다고 한다.

이영준씨가 조사를 받는 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검사는 "진술서를 쓰고 시안하면 집에 바로 보내주지만, 부인하면 집에 못가고 구치소로 보내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씨가 검사의 질문에 부인하자 "뭐야, ××놈아, 이 ××봐라"고 하며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대 때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씨에게 "구치소에 가야하니까 기다리라"고 하여 이씨는 검사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8시경 수사가 끝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씨는 북부지청 321호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사 노관규"라고 쓰여 있는 명패 앞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조사를 진행한 사람이 노관규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씨는 여러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머리를 치고 빈말은 하는 등의 수사관의 태도에 당시 심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시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노관규 검사에게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11월 5일과 11월 20일 두 차례 사실확인요청서한을 보냈다. 두 번째 서한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 「사법감시」에 이 내용을 게재할 것도 함께 밝힌 바 있으며,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바로잡음이나 검사의 의견을 함께 게재할 수 있음'도 아울러 밝혔다. 그러나 서한을 수령하고도 노관규 검사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사법감시 제6호 17면

“법원, 경찰의 자의적 수사권행에 잇단 제동” 기사에 대한 반론

기사에서 인용한 첫번째 사례, 즉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당한 사례의 경우는 실무상 당시 수사기관의 업무착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감시』에서는 마치 경찰이 처음부터 “불법한 의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듯이 보도한 것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두번째 사례(재구속 사유 없음으로 인해 영장기각)의 경우는, 5명 중 2명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다른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첫번째 청구당시 판사가 밝힌 기각이유는 i)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48시간이 지나서 영장을 청구했고, ii)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다

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문제된 사건의 경우 재구속할만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구속금지의 원칙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긴급구속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함으로써 석방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사전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백형구 외, 주석형사소송법, 법원사, 1996, 273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당해 법조문의 해석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감시』의 기사는 사건의 전반부

만 보도하고, 그 후의 사실에 대해서까지 보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감시』의 논조가 “관심어린 질책”이 아니라 “비우호적 선입견에 바탕을 둔 비난”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 “사법문화수준 향상”이라는 큰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성영

사법감시 제6호에 실린 기사에 대하여 반론이 들어와 이를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사법감시』지는 반론과 비판에 대하여 항상 열려 있는 『사법감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격월간 『사법감시』

통권 제7호 / 1996년 12월 • 등록번호 마-2428

발행인 김종배

편집인 박은정

편집자문위원 남영진(한국기자협회 회장) 심재우(교수, 고려대 법학) 유현석(변호사) 한상범(교수, 동국대 법학) 한승헌(변호사)

편집위원 강기원(변호사) 박경자(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장) 박원순(변호사) 안경환(교수, 서울대 법학) 차병직(변호사) 한인섭(교수, 서울대 법학)

통신원 권규대(변호사/부천) 김외숙(변호사/부산) 김철준(변호사/수원) 나영명(전국병원노련 편집부장) 문중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조 국(미국 버클리대학)

발행처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 팩스 793-4745 / 통신 ID : PSPD